

特別基金運營規程

2004年 12月20日 第2回 定期總會 制定

第 1 條 (目的) 이 規程은 特別基金運營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 (特別基金) 特別會計는 다음과 같다.

1. 基金
2. 發刊基金
3. 기타 特別基金

第 3 條 (基金) 基金은 會員의 終身會費 및 歲計積立金으로 積立하여 金融機關에 預置시키고 利子收入은 一般會計로 移替한다.

第 4 條 (發刊基金) 發刊과 관련되는 特別基金의 積立金 利子收入은 一般會計로 移替한다.

第 5 條 (其他 隨時發生 特別基金) 其他 隨時로 發生하는 特別基金은 精算後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處理한다.

第 6 條 (基金의 借用) 學會事業을 修行하거나 學會運營을 위하여 基金에서 借用하고자 할 때에는 用途, 金額, 借用期間 등을 明示하여 理事會의 決議를 받아야 한다.

第 7 條 (基金 管理) 預金通帳과 印章管理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預金通帳 開設時에는 會長과 財務擔當 副會長 連名으로 한다.
2. 預金通帳은 財務理事가 管理하고 印章은 會長과 財務擔當 副會長이 各各 管理한다.

附 則

1. 本 規程은 2004年 12月 20日부터 施行한다.